# 경조 비지급세칙

## 2007년 1월 29일 제정 2009년 9월 9일 개정 2011년 12월 23일 개정 2012년 8월 24일 개정 2015년 4월 29일 개정

## ----**-** 현 행 안 개 정 안

### 제1조 (명칭)

본 세칙은 현대위아지회(이하"지회") 경조비 지급 세칙 으로 제정한다.

#### 제2조 (적용대상 및 경조금)

- 1. 경조금 재원은 매월 조합원 1인당 1,000원씩 거출하여 지급하다.
- 2. 다음 경조사에 대하여 지급한다.

_	<u> </u>			
			경조금	
	구분		(단위 :	
			만원)	
	결혼	본인 결혼	5	
		자녀 결혼	3	
	수연	본인 및 배우자 부모수연	3	
	사망	배우자 사망	10	
		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	5	
		자녀사망	10	
		조부모 사망	3	
		형제자매 사망	3	
	기타	상병위로금(3개월 이상)	5	
		정년퇴직	10	

3. 조합원 사망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을 급여공제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.

#### 제3조 (조화지급)

본인, 부모, 배우자 사망 시 지회장 명의로 3단조화를 지급한다.

#### 제4조 (경조금 신청)

경조금 신청은 경조사항 발생한 이후 지회 경조금 신청서와 경조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. (경조양식 제1호)

#### 제5조 (시행)

본 세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# 제6조 (통상관례)

본 세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.